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17일, 정성호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8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3.9.2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
결)

제3차 국방위원회(2024.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성호의원)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에 그치고 있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시행

- ☐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창업 활성화 및 경영지원 사업 외에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등의 사업

을 추가하여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현행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도 ‘창업 활성화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지원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사업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2019년 산업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 친화형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서 2.67로 보통(3)을 하회하여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의존성, 민간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정도, 자금 원천의 다양성 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러한 실정에서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술혁신지원계획’이란 약칭은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만을 부각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국방 중소·벤처지원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국방중소·벤처기업 선정 및 비용 지원, 기술혁신지원단 신설

- ☐ 개정안은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안 제10조제3항),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 ☐ 현행법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기업에 직접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 제18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동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개정안은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력 활용과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한 기술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력 및 재원 조달이 어려운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근거 마련

- ☐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산학연 등 다양한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유사 입법례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에서의 대상 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개정안과 달리 법률에서 선도연구기관 지정 대상을 한정할 경우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있으나, 다양한 국방분야 연구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 선도연구기관’ 지정 대상 기관이 국방 및 방산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지도 의문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약칭을 “국방 중소·벤처지원계획”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설치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소속공무원 등을 통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일부 자구를 수정함.

[붙임]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기술혁신지원계획’이란 약칭은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만을 부각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국방 중소·벤처지원계획’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기술혁신지원계획”을 각각 “국방 중소·벤처지원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① -----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① ----- ----- ----- ----- ----- -----“국방 중소·벤처지원계획”-----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 ----- ----- -----국방 중소·벤처지원계획----- ----- -----.
<신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	③ ----- 국방 중소·벤처지원계획-----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성장지원”을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4호) 중 “성장지원을”을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로, “사항”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5.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6. 정보화 지원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8.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u>성장 지원</u>)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u>성장을 지원</u>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u>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u>) ① ----- ----- <u>성장</u>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벤처기업의 <u>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u>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u>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신 설>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신 설>	5.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신 설>	6. 정보화 지원
<신 설>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신 설>	8.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3. (생략)

4.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9. (현행 제3호와 같음)

10. -----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
하기-----
-----사업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

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